

서울서부지방법원 2019. 5. 16 선고 2018가단224005 판결 [건물철거 및 토지인도등]

전 문

원고1. A

2. B

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대현

피고1. C

2. D

3. E

4. F

5. G

6. H

7. I

8. J

9. K

소송대리인 L

10. M

11. N

변론 종결2019. 4. 18.

판결 선고2019. 5. 16.

주 문

1. 원고들에게,

가. 피고 C은 1/3 지분에 관하여, 서울 마포구 ○ 전 1380m² 중 별지 도면 표시 93, 94, 95, 96, 97, 98, 9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①부분 지상 시멘트블록조 기와지붕 단층 주택 30.66m² 및 같은 도면 표시 99, 100, 31, 32, 9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②부분 지상 시멘트블록조 슬레이트지붕 화장실 1.16m²를 철거하고, 같은 도면 표시 25, 26, 27, 28, 29, 30, 31, 32, 33, 99, 2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(ㄱ)부분 토지 59m²를 인도하고,

원고 A에게 248,948원 및 2018. 12. 1.부터 위 토지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3,002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, 원고 B에게 금 7,909,441원 및 2018. 12. 1.부터 위 토지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87,28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고,

나. 피고 D, 피고 E은 각 1/4(또는 1210/4840) 지분에 관하여, 피고 F은 396/4840 지분에 관하여, 피고 G은 121/4840 지분에 관하여, 피고 H은 286/4840 지분에 관하여, 피고 I은 121/4840 지분에 관하여, 피고 J은 286/4840 지분에 관하여, 각 위 같은 도면 표시 107, 108, 109, 110, 111, 112, 113, 114, 115, 116, 117, 120, 119, 121, 122, 123, 124, 125, 126, 127, 10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⑤부분 지상 시멘트블록, 벽돌 등 혼합조 기와 위 천막지붕 단층 주택 68.05m² 및 같은 도면 표시 117, 118, 119, 120, 11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⑥부분 지상 시멘트블록조 슬레이트 위 천막지붕 화장실 및 다용도실 6.42m²를 철거하고, 같은 도면 표시 28, 27, 45, 44, 43, 42, 41, 40, 39, 29, 2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(ㄷ)부분 토지 104m²를 인도하고,

피고 D, 피고 E, 피고 F, 피고 G, 피고 H, 피고 I, 피고 J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438,828원 및 2018. 12. 1.부터 위 토지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5,293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, 원고 B에게 금 13,942,083원 및 2018. 12. 1.부터 위 토지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153,85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고,

다. 피고 K은 2/11 지분에 관하여, 피고 M, 피고 N은 각 3/11 지분에 관하여, 각 위 같은 도면 표시 176, 177, 178, 179, 180, 181, 184, 185, 186, 187, 188, 189, 190, 191, 192, 193, 17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⑭부분 지상 목조, 시멘트블록조 등 혼합조 기와 위 천막지붕 단층 주택 81.17m², 같은 도면 표시 181, 182, 183, 184, 18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⑮부분 지상

시멘트블록조 슬래브지붕 화장실 및 창고 4.68㎡, 같은 도면 표시 85, 86, 87, 88, 89, 8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㉔부분 지상 시멘트블록조 골함석지붕 보일러실 1.63㎡를 철거하고, 같은 도면 표시 6, 5, 90, 91, 92, 75, 74, 73, 81, 82, 83, 84, 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(ㅇ)부분 토지 141㎡를 인도하고,

피고 K, 피고 M, 피고 N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594,952원 및 2018. 12. 1.부터 위 토지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7,176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, 원고 B에게 18,902,249원 및 2018. 12. 1.부터 위 토지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208,586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라.

2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이 사건은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가합30891호와 관련 사건임.

1. 청구의 표시: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가. 피고 N에 대하여: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)

나. 피고 J, K에 대하여: 갑 제1 내지 3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별지 청구원인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.

이에 대하여 피고 J, K은 자신들은 망인과 단절되어 따로 살아왔고 부동산을 직접 점유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, 따로 살아왔다는 것은 법률상의 권리의무관계에 영향이 없는 것이어서 법적인 항변사유가 될 수 없고, 건물의 소유자는 건물의 부지를 점유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므로 위

피고들이 상속인으로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이상 직접 점유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점유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어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.

다.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: 자백간주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)

판사김양규

별지